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05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7. 16.

판 결 선 고 2021. 8. 2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2917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22,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22,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22,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22,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 항소취지 역시 그와 같이 확장한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 6. 29.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보증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6. 28.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9. A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라 E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30,430,919원을 변제하였다.

라. A은 2019. 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0분의 1 지분을 35,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22.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18. 1. 8.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4억 2,5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A이 피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던 즈음에는 A은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4억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2억 8,800만 원의 가압류가 마쳐지는 등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D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위 토지는 327,300,000원에 매각되어, 선순위 채권자인 I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양평군이 각 채권금액을 100% 배당받았고, 신청채권자 D은행이 230,833,166원(배당비율 88.08%)을, 근저당일부이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38,409,278원(배당비율 38.41%)을 각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10분의 1 지분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였다.

한편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매매계약을 18,622,0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을 구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 역시 제1심판결의 범위 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더라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D은행 및 근저당권일부이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역시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배당이의 등을 구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 피고에게 그 가액의 지급을 명한다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부동산 목록

경기 양평군 J 전 893㎡. 끝.

